

#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

(권수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발 의 자 : 권수정, 봉양순 의원(2명)  
찬 성 자 : 임종국, 황인구, 정진철,  
강대호, 장상기, 권영희,  
김 경, 장인홍, 이호대,  
김경우, 전병주, 이상훈,  
최정순, 채유미, 김경영 의원  
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13년 보건복지부 한국아동종합실태에 따르면 방과 후 사교육 등으로 인해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 국가 중 하위권으로 보고되고 있음. 이에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쉬면서 놀 수 있도록 하고, 놀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모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시장의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함(안 제5조)
- 마.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)

바.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서울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함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놀이권”이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,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.
4. “취약계층 아동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.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
  - 나. 아동의 부모 등이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
  - 다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장애아동
  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
  - 마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
  - 바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

제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

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이 놀이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을 지역별로 충분히 조성하여야 하며,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놀이 관련 시책 등을 추진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2.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3.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반조성
4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
5. 그 밖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아동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아동 및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2. 아동 놀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
3. 아동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
4. 놀이 시간 부족에 관한 개선 사업
5.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및 교육사업: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(공무원, 교사, 보육교사, 아이돌보미 등), 부모 등 아동의 놀이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
6. 그 밖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
3. 그 밖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

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이권 관련 업무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연 4회 정례회를 개최하고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.

제11조(놀이활동가 지원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아동 놀이문화의

공유 및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놀이프로그램 운영
2.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비영리민간단체 지원) 시장은 아동 놀이권의 확산 등을 위하여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 및 단체, 교육기관,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4조(표창)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), 제8조(위원회의 설치)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, 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운영 비용 발생
  - 제7조(지원사업)의 경우 기존 추진중인 유사사업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    - ※ 우리동네보육반장, 공동육아나눔터, 열린육아방, 육아공동체 지원사업, 육아종합지원센터, 생태친화형어린이집, 서울상상나라, 어린이복합시설, 녹색장난감도서관 등이 어린이 놀이문화 지원사업 포함하고 있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144,9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44,900천원으로 연평균 28,98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할 수 있으며, 물가상승률 미반영
  - 실태조사는 실시주기가 조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
  - 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하고, 조례안에 따라 정례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- 상세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실태조사 비용 (조례안 제6조)	30,000	-	30,000	-	30,000	90,000
	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비용 (조례안 제8조)	10,980	10,980	10,980	10,980	10,980	54,900
	소계(b)	40,980	10,980	40,980	10,980	40,980	144,900
□ 총 비용(b-a)		40,980	10,980	40,980	10,980	40,980	144,900



○ 실태조사 비용 ≙ 90,000천원

- 실태조사 비용

$$= 30,000\text{천원} \times 3\text{회}$$

※ 참고) 실태조사 단가(2018년, 2019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)

- 아동종합실태조사 30,000천원(2019년)
- 청소년실태조사 30,000천원(2018년)
-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,500천원(2019년)
- 노숙인실태조사 63,000천원(2019년)

○ 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운영 비용 ≙ 54,9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 (연간 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운영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- 연간 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운영 비용

$$= (\text{참석수당} \times \text{수당지급 참석인원} \times \text{개최건수}) + (\text{업무추진경비} \times \text{참석인원} \times \text{개최건수})$$

$$= (150,000\text{원} \times 10\text{명} \times 6\text{회}) + (30,000\text{원} \times 11\text{명} \times 6\text{회})$$

$$= 9,000\text{천원} + 1,980\text{천원}$$

$$= 10,980\text{천원}$$

※ 수당 지급인원은 위원 11명 중 업무 담당공무원 1명을 제외한 10명, 업무추진경비는 11명 기준

※ 회의참석 수당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,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

※ 업무추진비 단가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[별표1]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     여차민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